

보도시점 2025. 3. 31.(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5. 3. 28.(금)

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합동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지원 강화

-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환경부·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도·점검 추진
- 축산농가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우수시설 포상 등 환경보전 유인책도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포상하여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 조치하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축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축산업계의 퇴비·액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중점 지도·점검 사항 및 주요 위반 사례.
 - 2.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점검·지원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현왕진 (044-201-7078)
		담당자	주무관	이신영 (044-201-7077)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351)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민 (044-201-2362)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의무



퇴비사 이외 장소(농경지, 하천변 등)에 분뇨・퇴비 이적・방치

• 퇴비 보관 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관련근거: 「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퇴비·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및 농가 내 미비치

- · 퇴비·액비 반출 시 기록, 과거 3년간 대장 보관
- * 관련군거: '가족문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미부숙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미실시

- 퇴비·액비 살포 후에도 머무숙 적발 시 과태료 대상
- * 관련군가: '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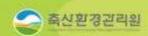


축사 및 처리시설 허가 변경 신고 누락

• 무하가 마신고 시설 사용 또는 변경 하가 신고 누락 시 행정처분 등 대상 * 관련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제12조







붙임 2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점검 · 지원 계획

- □ 배경 및 목적
- (기존) 우리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환경청·지자체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추진
- (개선)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란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속 이외 ^{확대}교육·홍보 등으로 농가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 유도
- □ 지도·점검 전략 및 지원반 구성

$^{7/2}$ (환경부) 점검 \Rightarrow $^{1/2}$ (환경부·농식품부) 60 점검 + $^{8/2}$ 애로사항지원(교육·홍보)

- (전략) 가축분뇨 배출자 및 이용자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 마련
 - (인식 제고) ^{환경부지자체}환경부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농식품부 및 생산지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통해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
 - (동기 부여) 점검 시 ^①환경관리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검토, ^②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안내를 통해 <u>환경과 상생하는</u> 축산발전 추진 유도
- (합동 점검·지원반 구성) 환경부·농식품부 담당과장을 공동반장으로 하고, 교육·홍보반 및 지도·점검반을 구성·운영
 - (인센티브 병행) 점검 시 환경관리 우수시설 발굴 → 인센티브*와 연계 방안 검토
 - * 상장 수여 검토,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검토, 국비사업 지원한도 상향 검토, 지역별 우수관리 사례 전파 등

